

# 학 칙

1996. 08. 10.	제	정
1997. 09. 22.	1차	개정
1998. 02. 02.	2차	개정
1998. 04. 06.	3차	개정
1998. 12. 04.	4차	개정
1999. 02. 01.	5차	개정
1999. 12. 01.	6차	개정
2000. 09. 04.	7차	개정
2001. 11. 22.	8차	개정
2002. 11. 01.	9차	개정
2003. 09. 01.	10차	개정
2004. 11. 16.	11차	개정
2006. 06. 21.	12차	개정
2006. 12. 26.	13차	개정
2007. 01. 26.	14차	개정
2007. 08. 03.	15차	개정
2008. 03. 01.	16차	개정
2009. 01. 06.	17차	개정
2009. 09. 01.	18차	개정
2010. 10. 11.	19차	개정
2010. 11. 29.	20차	개정
2011. 08. 31.	21차	개정
2012. 02. 01.	22차	개정
2012. 03. 28.	23차	개정
2012. 09. 21.	24차	개정
2013. 01. 17.	25차	개정
2013. 02. 15.	26차	개정
2013. 12. 23.	27차	개정
2014. 02. 21.	28차	개정
2014. 05. 12.	29차	개정
2015. 02. 27.	30차	개정
2015. 12. 28.	31차	개정
2016. 07. 01.	32차	개정
2016. 11. 01.	33차	개정
2018. 11. 30.	34차	개정
2019. 10. 29.	35차	개정
2020. 01. 14.	36차	개정
2020. 03. 23.	37차	개정
2021. 01. 21.	38차	개정
2021. 02. 25.	39차	개정
2021. 03. 10.	40차	개정
2021. 07. 22.	41차	개정
2021. 12. 28.	42차	개정
2022. 01. 17.	43차	개정
2022. 02. 14.	44차	개정
2022. 03. 10.	45차	개정
2022. 07. 21.	46차	개정
2023. 03. 03.	47차	개정
2023. 04. 13.	48차	개정
2023. 08. 16.	49차	개정

2023. 12. 19. 50차 개정  
2024. 01. 30. 51차 개정  
2024. 09. 02. 52차 개정  
2024. 10. 23. 53차 개정  
2024. 12. 12. 54차 개정  
2025. 03. 10. 55차 개정  
2025. 09. 08. 56차 개정  
2025. 10. 30. 57차 개정  
2026. 01. 22. 58차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교육기본법 제2조와 고등교육법 제28조에 규정된 교육목적과 성산효대학원대학교가 기독교의 성경적 효에 입각하여 설정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과 방침, 학사운영,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명칭)** 본교는 성산효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

**제3조(학위과정)** ① 본교에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두되, 석·박사통합과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25.10.30.)  
②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내에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영어과정(English Track)과 이중언어과정을 둘 수 있다.(신설 2025.10.30.)

**제4조(과정정원)** 본교의 학위과정별 학과편성 및 학생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01.21., 2021.03.10., 2022.01.17., 2024.09.02., 2024.10.23., 2024.12.12.)

1. 석사과정 - 67명

HYO효교육학과, 효신학과, 예술융합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청소년교육학과, 상담심리학과, 한국어교육학과

2. 박사과정 - 30명

효학과(효교육, 효신학, 예술, 사회복지, 아동·청소년교육, 상담심리, 한국어교육 전공)

3. 석·박사통합과정 : 학생정원은 위 2호의 정원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4. 외국인 유학생 :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정원 관련 기준에 따른다.

5. 영어과정 및 이중언어과정 : 영어과정 및 이중언어과정의 정원은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정원 관련 기준에 따르되, 모집 단위별로 따로 정한다.(신설 2025.10.30.)

## 제2장 입학, 편입학

**제5조(입학 시기)** 본교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 초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① 본교 석·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09.02.)

1.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자,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박사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자, 법령에 따라 석사학위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삭제 (2024.09.02.)
- ② 박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와 동일계 학과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계열의 학과는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업수행 가능여부 등을 가려 입학할 수 있다.(개정 2024.09.02.)

- 제7조(입학지원)** ① 본교에 입학할 지원자는 입학원서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01.21.)
- ② 입학지원의 절차 제출서류, 입학전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
- ③ 정원의 입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8항에서 정한 안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등 입학할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 전형 등 필요한 사항은 입학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신설 2021.01.21.)(개정 2024.09.02.)
- ④ 정원의 입학의 경우 지원절차는 정원내 입학 지원 절차와 같다.(신설 2021.01.21.)

- 제8조(입학전형)** ① 석사과정 전형은 서류심사, 면접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답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6.07.01., 2021.01.21., 2024.09.02.)
- ② 박사과정 전형은 서류심사, 면접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실기시험과 외국어시험(영어)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시험은 공인된 어학능력 검정시험(TOEFL, TEPS 등)의 일정 성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07.01., 2021.01.21., 2024.09.02.)
- ③ 입학지원자의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입학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개정 2024.09.02.)

**제9조(편입학)** (제목개정 2024.09.02.) ① 삭제 (2024.09.02.)

1. 삭제 (2024.09.02.)
  2. 삭제 (2024.09.02.)
  3. 삭제 (2024.09.02.)
- ② 삭제 (2024.09.02.)
- ③ 편입학은 신입학전형에 준하여 전형하며, 모집 시행여부는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6.07.01.)
- ④ 편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 여석이 있을 경우 모집하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07.01., 2022.02.14., 2023.12.19.)

학위과정	편입학기	지원 자격	
		정규등록학기 수	이수학점
석사과정	2	1학기 이상	9학점 이상
	3	2학기 이상	18학점 이상
박사과정	2	1학기 이상	9학점 이상
	3	2학기 이상	18학점 이상

⑤ 편입학은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본교 대학원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으로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1.12.28.)

**제9조의2(입학취소)** (본조신설 2024.09.02.) 총장은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한다.

### 제3장 수업, 수업연한, 교과과정, 학점 및 수료

**제10조(수업)** ① 본교의 학년은 3월에서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2학기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③ 방학 중에 필요에 따라 계절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⑤ 수업은 전일제수업,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제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대면수업과 동시진행하는 하이브리드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1.01.21., 2023.08.16., 2024.09.02., 2025.09.08.)

⑥ 휴업일은 다음과 같이 정기휴업일과 임시휴업일로 나눈다.

1. 정기휴업일 : 하계 및 동계 방학, 법정공휴일, 일요일, 개교기념일

2. 임시휴업일 : 정기휴업일 외 기타사유로 필요 시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07.01., 2024.09.02)

⑦ 국가비상사태, 재난 위기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울 때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택수업(과제물 활용 수업, 실시간 화상교육 등)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세부규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0.03.23., 2024.09.02.)

⑧ 원격수업을 운영할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신설 2021.01.21.)

1. 원격수업 교과목 분류(개정 2023.08.16.)

모든 교과목 중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80% 이상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

2. 원격수업 개설 기준(개정 2024.09.02.)

원격수업 개설 기준은 대학원위원회가 정한다.

3. 원격수업의 운영 및 절차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한다. 단, 실험·실습 등 교과목의 특성상 원격수업 운영이 어려운 강좌에 대해서는 교과목담당 교수의 재량으로 진행한다.

4. 원격수업의 이수 기준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평점 및 학점제를 기본으로 하며, 원격수업의 학점 당 이수 시간 및 수업 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5. 삭제 (2024.09.02.)

6. 삭제 (2024.09.02.)

7. 삭제 (2024.09.02.)

8. 원격수업의 폐강 및 분반 기준(개정 2024.09.02.)

한 교과목당 수강생은 최소 5명 이상을 원칙을 하되 최소인원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할 수 있다.

9. 원격수업 관리위원회(개정 2024.09.02.)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원격수업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0. 원격교육지원센터(개정 2024.09.02.)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교직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둔다.

11. 삭제 (2024.09.02.)

12. 삭제 (2024.09.02.)

㉠ 대면수업과 동시진행하는 하이브리드수업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신설 2023.08.16.)(개정 2025.09.08.)

1. 하이브리드수업 교과목 분류(개정 2025.09.08.)

모든 교과목 중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이 대면수업과 동시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 단, 하이브리드수업의 비중이 전체 수업(평가 활동 제외) 시수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2. 하이브리드수업 개설(개정 2024.09.02.)

대학원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3. 하이브리드수업 진행(개정 2024.09.02., 2025.09.08.)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대면수업과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시 진행한다.

4. 하이브리드수업의 운영

가. 이수기준은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평점 및 학점제를 기본으로 한다.

나. 학점인정과 출석 및 결석 처리, 수료 및 이수학점 등 기타 관련 사항은 대면수업을 준용한다. (개정 2024.09.02.)

**제10조의2(영어과정 및 이중언어과정)** (본조신설 2025.10.30.) ① 영어과정은 학생이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의 50% 이상을 영어로 진행하는 교과목으로 구성하며, 이중언어과정은 학생이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의 50% 이상을 한국어 외의 외국어로 진행하는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② 영어과정과 이중언어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을 따른다.

**제11조(수학연한)** 본교의 수업 및 재학 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수업연한은 2년(목회학전공(M.Div.) 3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5년(목회학 전공(M. Div.)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박사과정 :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석·박사통합과정 :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1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입학자격, 이수학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12조(교과과정)** ① 석·박사과정의 교과과정에 각각 공통과목, 전공과목, 논문연구를 둔다.(개정 2016.07.01., 2019.10.29., 2024.09.02.)

② 각 과정의 학과와 학과내 전공과정의 교과편성, 특수과정의 교과편성과 교과과정의 설정·변경 및 그 원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과과정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13조(수료 및 이수학점)** ①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을 1학점으로 하여 본교에서 이수해야 할 과정별 수료이수 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01.21., 2021.03.10.)

1. 석사과정
  - 가. 목회학전공을 제외한 모든 전공 : 24학점 이상(개정 2021.12.28., 2024.09.02.)
  - 나. 목회학전공(M. Div.) : 69학점 이상(개정 2021.12.28., 2024.09.02.)
2. 박사과정 : 36학점 이상. 다만,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소속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전공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이 때 전공선수과목에 관한 사항은 박사과정 운영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1.12.28., 2024.09.02., 2025.03.10.)

② 석사과정 전 학과 학생 중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교과추가이수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수료이수학점에 전공과목으로 6학점을 더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24.09.02.)

③ 음악, 미술, 예술기획 전공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졸업연주회, 졸업작품전시회, 졸업공연기획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개정 2021.12.28., 2023.12.19., 2024.09.02.)

④ 본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본교 타 석사과정을 편·입학하는 경우와 본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본교 타 박사과정을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이수했던 과목수와 학점 상관없이 공통과목(학점)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07.01., 2021.02.25., 2021.12.28., 2023.03.03.)

**제14조(과목 및 과정 총학점)** ①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과목당 학점은 석·박사과정 2~3학점으로 한다.(개정 2016.07.01., 2019.10.29., 2020.01.14., 2020.03.10., 2024.09.02.)

② 전조 제1항의 각 과정별 총 이수학점 구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28., 2024.09.02., 2025.03.10.)

과 정		공통과목	전공과목	논문연구	논문대체이수	계
박사과정		6	30	P(3학기)		42 (선수과목 이수학점 미포함)
석사과정	일반	6	18		6*	24(30*)
	목회학전공 (M. Div.)	6	63		6*	69(75*)

\* 석사과정 학생 중 논문대체 교과추가 이수자

**제15조(학기당 이수학점)** ① 학생이 한 학기에 최대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석사과정 15학점, 목회학전공(M. Div.) 18학점, 박사과정 12학점이다.(단, 박사과정은 선수과목 이수 시 15학점)(개정 2016.07.01., 2020.01.14., 2021.12.28., 2022.01.17., 2022.03.10., 2024.09.02., 2025.03.10.)

② 계절학기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최대 9학점이며, 한 학기에 최대 수강할 수 있는 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7.01., 2023.12.19., 2025.03.10.)

**제16조(이수교과)** ① 각 학위과정에서 매 학기 이수해야 할 교과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항의 교과목 중 전공 간 관련과목은 교차수강 이수과목으로 할 수 있다.

③ 각 과정별 학생의 이수교과목 선택은 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7조(공통과목)** ① 공통과목은 공통필수과목과 채플을 두며, 석사과정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채플을 매 학기 이수해야 한다.(개정 2016.07.01., 2021.12.28., 2024.09.02.)

② 채플과목 이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개정 2024.09.02.)

**제18조(특설과정)** (제목개정 2024.09.02.) ① 특수연구, 각종자격 취득을 위한 특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규과정 외로 특설과정 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학점등록을 필하고 이수하여야 한다.

② 특설과정의 개설, 수강대상, 수강신청, 자격인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절학기 및 특설과정 시행과 인정에 관한 내규에 따로 정한다.(개정 2024.09.02.)

**제19조(전과 및 전공변경)** ① 전과 및 전공의 변경은 1학기 수료자로서 2학기 차에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1.12.28.)

② 전과 및 전공변경에 대한 자격, 허가범위, 전 취득학점의 인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과 및 전공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20조(수료인정 및 시기)** ① 수료를 위하여는 제13조에서 정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③ 각 학위과정의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별지1의 수료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21조(교환수강 및 학점인정)** ① 본교와 협정에 의해 학점교환제를 실시하는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사전에 수강을 승인받아 취득한 학점은 본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24.09.02.)
- ② 본교에 개설하지 아니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문 연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해당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으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5.09.08.)
- ③ 전항에 의하여 취득 또는 교환된 학점이 본교의 평가규정과 상이할 경우 그 이수시간과 학점은 제29조의 각 등급 평점과 가장 근사한 평점으로 인정하되 학점인정은 등급이 B0 이상인 경우 동일 또는 유사과목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09.02.)
- ④ 다른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수강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6학점 이내
  2. 박사과정 : 9학점 이내
- ⑤ 삭제 (2024.09.02.)
- ⑥ 삭제 (2024.09.02.)
- ⑦ 본교 소속 학과의 전공과목 외 타 전공과목을 연구에 필요한 목적으로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석·박사과정 각각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개정 2024.09.02.)

##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 제22조(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등록은 학업에 따라 정규등록, 연구등록, 연구생등록, 학점등록의 4종류로 구분한다.(개정 2021.12.28., 2024.09.02.)
- ③ 석사과정은 4회, 박사과정은 6회 이상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 등록금 산정, 등록 및 등록금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개정 2024.09.02.)

- 제23조(휴학)** ① 질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결석하게 될 경우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4.09.02.)
- ② 휴학기간은 각 과정마다 통산 2년으로 하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의 허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군복무,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28., 2024.09.02.)
- ④ 전염병과 같은 국가재난 상황의 경우 휴학은 예외로 하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01.21.)(개정 2024.09.02.)

- 제24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즉시 복학을 하여야 하며, 복학시기는 매 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4.09.02.)

**제25조(자퇴)** 질병 또는 기타사정으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6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 처리한다.(개정 2022.01.17., 2023.03.03., 2024.09.02.)

1. 이중 등록인 자(본교 내에서 이중 학적 불가)
2. 품행이 불량한 자
3.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 3의1. 재학연한 이내에 각 과정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4. 4주 이상 무신고 결석 자
5.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수업료)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진 퇴학한 자
6. 전체학기 평균 평점이 3.0 미만인 자
7. 징계위원회에서 제적 처분을 받은 자

**제26조의2(복적)** (본조신설 2019.10.29.)(조 변경 2025.03.10.)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재학 연한이 경과된 자의 경우 복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1.01.21., 2021.12.28., 2023.03.03., 2025.03.10.)

**제26조의3(재입학)** (본조신설 2024.09.02.)(조 변경 2025.03.10.)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위원회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 ② 재학연한 초과자,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 ③ 재입학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입학 수속 및 등록을 마쳐야 한다.
- ④ 재입학한 학생은 자퇴 또는 제적 이전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⑤ 재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처음 입학일로부터 기산한다.

## 제5장 수강신청 및 시험과 성적

**제27조(수강신청)** ① 해당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은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지정기간 내에 수강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09.02.)

- ② 수강신청 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기일 내에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또한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09.02.)
- ③ 수강신청 및 변경과 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강신청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28조(시험)** ① 시험은 매 학기말에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시험, 연구과제, 연구발표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07.01., 2024.09.02.)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험 실시일 전에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6.07.01.)

③ 추가시험은 해당 시험 후 1주일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과목의 최종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4.09.02.)

**제29조(성적평가)**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시험성적, 출석상황, 과제평가성적 등을 총괄하여 평가하되 학업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09.02., 2024.12.12)

1. 학업성적의 등급평점(개정 2024.12.12.)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97-100	4.3	Co	74-76	2.0
Ao	94-96	4.0	C-	70-73	1.7
A-	90-93	3.7	F	0-69	0
B+	87-89	3.3	P	이수	채플, 실습, 실기 등
Bo	84-86	3.0	NP	미이수	
B-	80-83	2.7			
C+	77-79	2.3			

2. 삭제 (2024.09.02.)

3. P/NP(개정 2024.09.02., 2024.12.12)

채플, 실습, 실기 등의 과목은 P(PASS,이수)/ NP(NON PASS, 미이수)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P/NP 과목은 수료학점에는 포함하나, 수료학점 평점 평균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4. 채플은 학점을 부여하지 않으나, 졸업요건에 포함한다.(개정 2024.12.12.)

**제30조(성적인정)** 등급 C-(1.7) 이상의 과목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나, 수료는 총 평점평균이 3.0(Bo)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4.09.02.)

**제31조(학점인정 출석)** ① 매 학기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 이상 결석할 경우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개정 2024.09.02.)

② 출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출·결석처리에 관한 내규에 따로 정한다.

**제31조의2(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 (본조신설 2024.01.30.)(조 변경 2025.03.10.) ①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지 않게 한다.(개정 2024.09.02.)

②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보충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한다.(개정 2024.09.02.)

## 제6장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제32조(학위청구논문제출)** ① 각 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학위논문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

(개정 2021.12.28.)

②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및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시기,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학위논문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개정 2023.04.13.)

③ 외국어 및 종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절차, 방법, 합격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국어 및 종합시험 시행규정에서 정한다.(개정 2024.09.02.)

**제33조(논문심사)** ① 석사 또는 박사과정의 논문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주·부심)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의결(논문지도교수 포함)을 거쳐 총장이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개정 2021.12.28.)

1. 석사과정 :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되 그 중 1인을 심사위원장(주심)으로 하고 2인은 심사위원(부심)으로 한다. 필요시 동일 전공분야의 외부 학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박사과정 : 심사위원은 본교 교원 4인 이내, 외부 연관 전공분야 1인 이상 등 최소 5인 이상으로 하되 그 중 1인을 심사위원장(주심)으로 한다.(개정 2016.07.01., 2021.12.28., 2024.09.02.)

② 논문심사는 석사는 3회, 박사는 5회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07.01.)

③ 각 과정별 학위청구논문 합격여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석사과정 : 본심사와 구술시험 시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승인에 의한다.
2. 박사과정 : 본심사와 구술시험 시 심사위원 5인 중 4인 이상의 승인에 의한다.

④ 학위논문의 심사절차와 합격 여부 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위논문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개정 2024.09.02.)

**제34조(학위수여)** ① 삭제 (2024.09.02.)

② 석·박사학위 수여는 제13조에서 정한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 (외국어 및 종합시험) 및 학위청구논문의 심사(구술시험 포함)에 합격한 자를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학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전공분야에 따라 제3항에 규정한 종별의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24.09.02.)

③ 본교에서 수여하는 학위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09.02., 2024.10.23., 2024.12.12.)

1. 전공에 따른 수여 학위 (개정 2024.09.02., 2026.01.22.)

과정	학 과	전 공	수 여 학 위
석사	HYO효교육학과	효문화	효학(M.A.)
		효교육	효교육학(M.Ed.)
		다문화교육, 평생교육	교육학(M.Ed)
	효신학과	목회학	목회학(M.Div.)
		효신학	효신학(Th.M.)
		선교학	선교학(M.A.)
	예술융합학과	음악, 미술, 예술기획	예술학(M.A.)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복지경영	사회복지학(M.S.W.)
	아동·청소년교육학과	아동·청소년교육	교육학(M.Ed.)
	상담심리학과	가족상담	상담학(M.A.)
		교육상담	교육학(M.Ed.)
		군상담	상담학(M.A.)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	교육학(M.Ed.)	
박사	효학과	효교육, 효신학	효학(Ph.D.)
		예술, 사회복지	철학(Ph.D.)
		아동·청소년교육, 상담심리, 한국어교육	교육학(Ph.D.)

2. 삭제 (2024.09.02.)

④ 학위수여결정, 수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위수여규정 및 대학원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5조(명예박사학위 수여)** ① 본교의 교육이념 달성을 위한 효학정립 및 효사상의 확립과 확산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성경적 효사상 연구에 특수한 공적을 나타내 학술의 진흥과 인류문화향상에 공헌한 인사에게 제34조에서 정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이를 받는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성질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신설 2024.09.02.)

1. 명예효학박사(H.D.)
2. 명예신학박사(D.D.)
3. 명예문학박사(Litt.D.)
4. 명예교육학박사(Ed.D.)

**제36조(학위기)**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기는 별지2와 같으며 명예박사학위기는 별지3과 같다.

**제37조(학위논문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09.02.)

**제38조(수여학위 취소)** 각 학위(명예박사학위 포함)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와 부정한 행위로 취득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수여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09.02.)

## 제7장 자격시험

**제39조(자격시험)** 자격시험이라 함은 석·박사과정에서 학위취득에 있어 전제요건으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 및 전공에 대한 종합시험을 말한다.

**제40조(외국어 시험)** ① 박사 학위과정의 학생은 전공분야의 연구에 필요한 영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본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본교에 박사 편입학을 한 경우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1.01.21.)

② 외국어시험은 공인된 어학능력 검정시험(TOEFL 또는 TEPS)의 성적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합격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신설 2021.01.21.)(개정 2024.09.02.)

**제41조(종합시험)**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에 해당 전공분야 교과에 대한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은 전공분야 교과목에 대하여 석사과정은 3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5과목 이상 실시를 원칙

으로 하되, 시험교과목은 매 학기 초에 학과별로 주임교수가 정하여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개정 2024.09.02.)

**제42조(합격기준)** ① 각 자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만점을 100점으로 하여 합격점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어시험 : 60점 이상
2. 종합시험 : 석사과정 60점 이상, 박사과정 70점 이상

② 외국어 및 종합시험 응시자격, 시험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국어 및 종합시험 시행 규정에 따로 정한다.

## 제8장 공개강좌, 연구과정, 학점은행제 및 외국인 학생

**제43조(공개강좌)** ① 정규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공과 관련된 직무, 교양, 연구 등 학식과 실천을 지도하기 위한 공개강좌를 둔다.

② 공개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가 공시 한 강좌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연구과정)** (조 변경 2025.03.10.) ① 본교에 심오한 학식 및 기술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할 목적으로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수업연한 1년 이내 과정의 연구과정을 둘 수 있으며,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09.02.)

1. 4년제 대학졸업자
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연구생은 대학원 석사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학기당 9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개정 2024.09.02.)

③ 전항에서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가 정규과정에 입학하였을 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칙 제 22조 제3항에서 정한 의무등록 회수와 취득학점으로, 1회 등록 6학점 이내 또는 2회 등록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개정 2024.09.02.)

**제44조의2(학점은행제)** 본교 평생교육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원 규정에 따로 정한다.(개정 2016.07.01., 2024.09.02.)

**제45조(외국인 학생)** ① 외국인으로서 본교의 학위과정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입학절차를 거쳐야 하며, 비학위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각 정월 외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자라 할지라도 그 대학의 수업연한 등에 따라 본교에 입학할 자격이 인정된 학교 졸업자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다.

③ 외국에서 출생하고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재외교포학생의 입학허가 또한 전항과 같다.

## 제9장 학생지도 및 상·벌

**제46조(장학금)** ① 본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장학금 지급 규정 및 장학금 지급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6.07.01.)

② 본교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각급 기관, 단체 등의 위탁교육생에게는 본교와 위탁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47조(장학위원회)** ① 본교에 장학위원회를 두고 각종 장학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② 장학위원회 위원 위촉과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위원회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48조(학생지도)** ① 학생은 학교 학칙을 준수하고 총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각 과정 학생 중에 성적이 불량한 학생에 대하여는 총장이 학사경고를 할 수 있다.

**제49조(표창 및 징계)** ① 학생이 교내·외를 막론하고 선행을 하였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표창할 수 있다.

②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③ 학생에 대한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상벌규정에 따로 정한다.

## 제10장 직제, 대학원위원회 및 교수회

**제50조(교무조직)** (제목개정 2025.03.10.) ① 본교에는 부총장, 교목실장, 교학처장, 기획처장의 보직을 둘 수 있으며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12.28., 2024.09.02., 2025.03.10.)

② 교학처와 기획처에는 과장과 팀장 등 사무직원을 두며, 직제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4.09.02.)(개정 2025.03.10.)

③ 학과에는 주임교수와 학생의 개별학사지도와 논문의 연구지도를 위한 지도교수를 두되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4.09.02.)

④ 주임교수는 해당학과 학사업무와 학생지도업무 등을 총괄하고, 지도교수는 학과 내 전공별 연구 또는 학생지도에 임한다.(개정 2024.09.02.)

**제51조(사무조직)** (제목개정 2025.03.10.) ① 본교에는 교육지원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을 둔다.(개정 2025.03.10.)

② 행정지원국에는 국장과 행정과장, 팀장 등 사무직원을 두며, 사무직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직제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07.01., 2019.09.16., 2021.12.28., 2024.09.02., 2025.03.10.)

**제52조(대학원위원회)** ① 본교 학사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총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총장 부재 시는 그 직무대리자가 이를 대행하며,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업무는 교학처장이 관장한다.(개정 2021.12.28., 2024.09.02.)

③ 대학원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12.28.)

1. 입학·졸업(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수업 계획에 관한 사항
6. 제시험 및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7.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
8. 학술연구 및 학술대회 등에 관한 사항
9. 학위논문에 관한 사항
10.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53조(교수회)** ① 본교의 발전 및 학생지도 등의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전 교수로 구성하는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발전계획 및 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2. 입학수준 및 학생유치에 관한 사항
3. 시험 및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4. 수업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28.)
5. 공개강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부의 하는 사항

③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재직 전임교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교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되, 총장 부재 시는 그 직무대리자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24.09.02.)

## 제11장 부속기관, 학술연구회

**제54조(부속기관 등)** (제목개정 2025.03.10.) ① 본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설기관, 총장직속기구 등 (이하 '부속기관 등'이라 함)을 두되, 세부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03.10.)

1. 부속기관 : 도서관, 학보사, 효역사관, 하모니상담센터, 성산학술연구원(개정 2024.09.02.)
2. 부설기관 : 평생교육원, 성산효한국어학당(개정 2021.12.28.)
3. 총장직속기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개정 2024.09.02., 2025.03.10.)

② 부속기관 등에는 각각의 장을 두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5.03.10.)

③ 부속기관 등의 장은 당해 기관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25.03.10.)

④ 부속기관 등에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 일반직원 중에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25.03.10.)

- 제55조(학술연구회)** ① 본교학생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으로 조직된 학술연구회를 둔다.  
② 학술연구회 회원은 재학생으로 한정하며 회원은 매학기 연구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학술연구회의 조직, 운영, 회비 등에 관하여는 학술연구회 규정에 따로 정한다.

## 제12장 학칙변경

**제56조(시안공고)** 학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안을 학교게시판을 이용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시안심의)** 변경안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학교법인 성산효교육재단 정관 제33조의7에 의거 대학평의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개정 2024.09.02.)

**제58조(변경 및 보고)** 변경 안 중 본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9조(시행공포)** 변경된 학칙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13장 대학자체평가

- 제60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 기준 및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 제14장 계약학과

- 제61조(계약학과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계약학과의 명칭 및 입학정원은 계약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서에 의한다.  
②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대학원 내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02.14.)

**제62조(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교육과정은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의 특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운영은 본교의 본과와 별개로 운영한다.(개정 2022.02.14.)

**제63조(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 ① 계약학과의 입학지원자는 계약된 산업체에 소속된 자로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학사학위, 박사과정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2024.09.02.)

② 학생선발 방법은 서류전형으로 할 수 있다.

**제64조(학생의 정원)**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별도의 정원(19명)으로 본다.(개정 2022.07.21.)

**제65조(운영경비 부담 및 학생 납부금)**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부담은 계약에 의한다. 단, 3학기 조기졸업과정 지원자의 경우에도 4학기 졸업과정 지원자의 등록금 총액과 등록금 인상율을 동일하게 적용 한다.(개정 2025.09.08.)

**제66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학기는 4학기 이상으로 운영하되, 계약학과의 경우 3학기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09.08.)

② 수업일수는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한다.

③ 계약학과의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리고 그밖에 관할청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수업장소는 계약에 의한다.

**제67조(설치운영기간 및 재학생 보호)** ①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은 계약에 의하되 학위수여기간 이상으로 한다.

②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 이전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학과를 폐지하는 경우에 계약학과의 학사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에 의하되, 본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학과 재학생이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도록 계약 당사자는 협력한다.

**제68조(이수학점 및 학위수여)** 계약학과의 총 이수학점은 본교 학칙에 따르며 학위수여종류는 제34조에 의한다.

**제69조(운영규정)** 계약학과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 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계약학과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개정 2022.02.14., 2024.09.02.)

**제70조(포상)** ① 학업성적과 연구활동이 우수한 학생,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의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1조(징계)** ①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5장 보 칙

**제72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73조(준용원칙)** 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과 법인정관 및 대학원대학교 헌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6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7년 0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8년 02월 0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8년 04월 0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8년 12월 0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9년 02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9년 12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0년 09월 0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1년 11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2년 1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자)** 이 학칙은 2003년 09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수학연한) 제11조 제1항 석사과정의 수업연한 2년(신학전공 3년), 재학연한 4년(신학전공 5년)은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학과명칭 변경) 이 학칙 시행 당시 2002학년도 가정사역학과 및 2003학년도 상담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이 학칙에 의한 가족상담학과(가정사역학 전공) 입학으로 본다.

③ (교과추가이수제도) 제13조 제2항에 규정한 교과추가이수학점제도는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④ (주임교수 등) 이 학칙 시행당시 제50조에 규정한 학과주임교수 및 지도교수는 이 학칙에 의거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⑤ (규정폐지) 이 학칙 시행과 동시 학칙시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4년 11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06년 06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2006학년도 3학점 수강신청 학생들은 이 학칙에 의거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학기당 이수학점) 제15조에 규정한 석사과정 한 학기 최대 이수학점 규정은 2005학년도 수강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6년 1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0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08월 0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08년 03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7학년도 전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 학칙 제13조 제2항에 의거 추가 이수학점(6학점이상)으로 석사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09년 09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학생은 개정학칙의 제13조 제2항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0년 10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0년 11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08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02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0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09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01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02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0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05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0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07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1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10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01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03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21년 01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1학년도 입학한 학생은 개정학칙을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21년 0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1학년도 입학한 학생은 개정학칙을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21년 03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1학년도 입학한 학생은 개정학칙을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1년 07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2년 01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2년 02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22년 03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2학년도 입학한 학생은 개정학칙을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2년 07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23년 03월 0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3학년도 입학한 학생은 개정학칙을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04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08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1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4년 01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24년 09월 0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4학년도 및 그 이전 입학한 학생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24년 10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4학년도 및 그 이전 입학한 학생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4학년도 및 그 이전 입학한 학생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25년 03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5학년도 입학한 학생은 개정학칙을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25년 09월 0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5학년도 입학한 학생은 개정학칙을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25년 10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5학년도 및 그 이전 입학한 학생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학칙은 2026년 01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6년 2월 졸업자부터 개정학칙을 적용한다.

별지1(제20조)

# 수료증

성명 :  
주민번호 :

상기자는 본 대학원      학과    년의      과정을 수료하였기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 . . .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 ○○○○

※ 상황에 따라 서식명, 표,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음

별지2(제36조)

석사제 호			
박사제 호			
<b>학 위 기</b>			
		성 명 : ○ ○ ○	
		생년월일 : ○○○○.○○.○○	
위 사람은 본 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 박사과정	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여)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으므로 이에		○○석사의 호학박사(○○전공)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b>논문 :</b>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 호학박사(Ph.D.)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b>성산효대학원대학교총장 ○○○</b>			
등록번호:성산효대원○○○○(전/후)○-○○-○○○호			

※ 상황에 따라 서식명, 표,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음

별지3(제36조)

명박제 호			
<b>명예호학박사 학 위 기</b>			
		성 명 : ○ ○ ○	
		생년월일 : ○○○○.○○.○○	
위 사람은 (공로 및 공적)			
본교 설립정신과 일치하여 이에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b>성산효대학원대학교총장 ○○○</b>			
등록번호:성산효대원○○○○(전/후)1-명D1-○○○호			

※ 명예박사 수여대상자의 공적내용에 따라 문안이 달라질 수 있음

※ 상황에 따라 서식명, 표,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음